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8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1호	500	700	1,000
나.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	법 제82조제	500	700	1,000

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·보존한 경우	1항제2호			
다. 법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1호	300	300	300
라.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1호			
1) 물로만 세차한 경우		50	50	50
2) 합성세제,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		100	100	100
마.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	500	700	1,000
바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낙시금지구역에서 낙시행위를 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	100	200	300
사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낙시제한구역에서 낙시행위를 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2호	30	60	100
아. 법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4호의2	100	200	300
자.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3호	60	80	100
차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3호	200	600	1,000
카.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2호	100	200	300
타.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	500	700	1,000
파.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3호의3	500	700	1,000
하.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	법 제82조제	500	700	1,000

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1항제3호의4			
거.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3호의5	500	700	1,000
너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(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)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4호	200	600	1,000
더. 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(폐수관로를 포함한다)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4호의3	100	200	300
러.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신설·증설 전에 오·폐수 유입처리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3호의2	60	80	100
머.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배수설비를 설치(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3호의3	60	80	100
버.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(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3호의4	60	80	100
서.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않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3호의5	60	80	100
어. 법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3호의6	60	80	100
저.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5호	200	600	1,000
처.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5호	100	200	300
커.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4호	60	80	100

터. 법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6호	100	200	300
퍼.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·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6호	1,000	1,000	1,000
허.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7호	100	200	300
고.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82조제2항제8호	100	200	300
노. 법 제6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7호	500	700	1,000
도.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7호	500	700	1,000
로.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	법 제82조제1항제7호	300	500	1,000
모.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4호의2	50	70	100
보.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5호	60	80	100
소.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82조제3항제6호	60	80	100